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3774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2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송애순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6.7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9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이호진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0.12.30.~	120,000,000		2020.12.30.	2020.12.11.		
<p><비고></p> <p>이호진: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 9. 27.임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(단, 임차권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).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3774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-1

매트로폴리스2-비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44

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,제1.2종 근린생활시설

지하5층 444.04㎡

지하4층 1207.36㎡

지하3층 1207.36㎡

지하2층 1207.36㎡

지하1층 1207.36㎡

1층 864.46㎡

2층 991.63㎡

3층 914.96㎡

4층 914.96㎡

5층 914.96㎡

6층 914.96㎡

7층 914.96㎡

8층 914.96㎡

9층 914.96㎡

10층 914.96㎡

11층 914.96㎡

12층 914.96㎡

13층 914.96㎡

14층 854.48㎡

15층 759.68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0층 1011호

철근콘크리트조

33.98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-1

대 1447.9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,447.9분의 4.997

감정평가액

109,000,00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주신청보증금
1회	2026.02.12	109,000,000	10,900,000
2회	2026.04.02	76,300,000	7,630,000
3회	2026.05.07	53,410,000	5,341,000
4회	2026.06.11	37,387,000	3,738,700